

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(한지아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20477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6. 8. 6.

발 의 자 : 한지아 · 박정하 · 이상휘
최은석 · 우재준 · 배준영
김형동 · 김대식 · 김태호
김소희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법원이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형을 선고하는 경우 학교, 유치원, 아동복지시설 등 아동 관련 기관에의 취업을 금지하는 명령을 함께 선고할 수 있도록 하면서, 학교장 등 아동 관련 기관의 장이 취업자 등에 대하여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을 조회하도록 하고 있음.

그런데 교육청이나 교육지원청에서 기간제교사 등을 모집하여 학교에 배치하거나 파견하는 경우, 모집 단계에서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을 조회할 수 있는 근거가 미비하여 기간제교사 등이 학교에 배치된 이후에야 학교장이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을 조회할 수 있는 상황임. 이 경우 학교에서 범죄 전력을 확인하는 기간 중 학생들이 아동학대 관련 범죄에 노출될 우려가 있고, 뒤늦게 취업제한 대상자임을 확인하여 재모집 절차를 진행할 경우 그 기간 동안 교육 현장에 인력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.

이에 교육감이나 교육장이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을 조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아동을 범죄의 위협으로부터 더욱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(안 제29조의3제6항 및 제7항 신설 등).

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

아동복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9조의3제1항제18호 중 “학습부진아 등”을 “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6항 및 제7항을 각각 제8항 및 제9항으로 하며, 같은 조에 제6항 및 제7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, 같은 조 제8항(종전의 제6항) 중 “제4항 및 제5항”을 “제4항부터 제6항까지”로 하며, 같은 조 제9항(종전의 제7항) 중 “제6항”을 “제8항”으로 한다.

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다음 각 호의 아동관련기관의 취업자등에 대하여는 본인의 동의를 받아 관계 기관의 장에게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를 요청하여 확인할 수 있다. 다만, 취업자등이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회신서를 교육감 또는 교육장에게 직접 제출한 경우에는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를 한 것으로 본다.

1. 제1항제8호의 유치원

2. 제1항제18호의 학교 및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는 기관

⑦ 제6항에 따라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을 조회한 경우 제5항에 따

른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를 한 것으로 본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[illegible]

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1. ~ 17. (생략)

18. 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2조 각 호의 학교 및 같은 법 제28조에 따라 학습부진아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는 기관

19. ~ 27. (생략)

② ~ ⑤ (생략)

<신설>

-----.

1. ~ 17. (현행과 같음)

18. -----

-----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-----

19. ~ 27. (현행과 같음)

② ~ ⑤ (현행과 같음)

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다음 각 호의 아동관련기관의 취업자등에 대하여는 본인의 동의를 받아 관계 기관의 장에게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를 요청하여 확인할 수 있다. 다만, 취업자등이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회신서를 교육감 또는 교육장에게 직접 제출한 경우에는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를 한 것으로 본다.

1. 제1항제8호의 유치원

2. 제1항제18호의 학교 및 학업

<u><신 설></u> ⑥ 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회신서를 발급하여야 한다. ⑦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의 요청 절차·범위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	<u>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는 기관</u> ⑦ 제6항에 따라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을 조회한 경우 제5항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를 한 것으로 본다. ⑧ 제4항부터 제6항까지----- ----- ----- -----. ⑨ -----제8항----- ----- ----- -----.
--	--